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7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2172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10. 16.

주 문

1.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133,350원, 지방교육세 197,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133,350원, 지방교육세 197,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133,350원, 지방교육세 197,230원의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7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이자 [redacted]구 B 대 104㎡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은 2014. 8. 20.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이 사건 신고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는 증여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취득세 2,120,000원, 지방교육세 196,000원 등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2,316,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원고가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4. 11. 10.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2,133,350원(가산세 13,350원 포함), 지방교육세 197,230원(가산세 1,230원 포함) 합계 2,330,58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C은 2014. 11. 20. 피고에게 위 증여계약이 취득세 신고 후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6. C에게 그 취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4. 10. 24. 증여계약이 해제되어 취득세 등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부과취소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라. 이에 C은 2014. 12. 16.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18. 기각되었다. 또한 C은 2014. 12. 24.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6.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7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신고는 C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검인을 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는 당연무효이고 위 하자가 승계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증여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C이 60일 이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신고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을 뿐 아니라 그 하자가 후행하는 징수처분 등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7

그러나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500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신고의 경우에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① C은 2014. 5. 14.경 방안에서 컴퓨터만 하고 어느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던 자신의 아들인 원고에게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마음을 먹고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인 D에게 이 사건 신고서의 작성을 위임하였다.

② 위 사무소의 직원 D은 위 신고서를 작성할 당시 C으로부터 수증자인 원고 명의의 인장을 건네받았을 뿐 원고로부터 위 신고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고, 증여에 대한 원고의 의사를 확인받은 사실도 없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 업무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③ C은 2014. 8. 20.경 원고와 합의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신고서 등 이 사건 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7

동산의 증여에 필요한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을 향유한 적이 없다.

④ 취득세에 관한 이 사건 신고의 경우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아니하여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고,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신고에 존재하는 당연무효의 하자는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이흥구

판사 인진섭

판사 김두홍